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543호

의 안 명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대상기관 교육부

의 결 일 2020. 11. 23.

주 문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3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권태성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응

위원 김의환

위원 강재영

위원 정정미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별 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의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2020. 11.



국민권익위원회

|| 순 서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실태 및 문제점	6
1. 학생 총원을 검증 및 정보제공 미흡	6
2.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부정·비리 사안 조치 부적정 ...	10
3.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11
IV. 개선방안	13
1. 학생 총원을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	13
2. 부정·비리 사안 제재조치 강화	15
3.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16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참고 1] 관련 법령	18
[참고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22
[참고 3]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	23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52. 고등교육의 질 제공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추진배경

- 고령사회 진입·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에 맞추어 대학 경쟁력 제고와 적정 규모화를 위해 '15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 그 결과를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유도
 -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구조개혁 노력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패 개연성 상존
 - 일부 대학에서 진단 지표 중 하나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이후 자퇴 처리하는 입시비리 발생
 - 학생 충원율*은 진단 지표 중 배점이 가장 크지만 부실한 평가방법과 검증으로 허위·조작을 방치하고 진단 공정성을 저해
- * 대학정원 대비 학생수 비율(%)로, '21년 진단 시 총점의 20%로 확대(100점 중 20점) 진단주기별 학생 충원율 배점 추이 : '15년 8점 → '18년 10점 → '21년 20점
- 최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대학교의 입시비리 사건'이 접수되어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을 위해 교육부로 이첩

■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진단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는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하여 허위로 입학**,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한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접수 (20.4월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권익위 조사·의결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 및 교육부 이첩**(20.4.20)

- 이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진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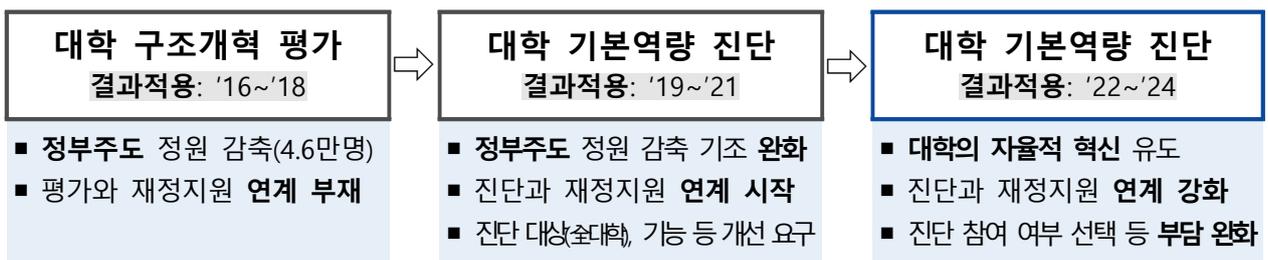
□ 추진경과 : 실태조사·개선안 마련(7~10월), 관계부처 협의·위원회 상정(~11월)

II. 제도 현황

□ 개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감축을 유도
 - ※ '18년 기준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4년에는 약 12만 명이 미충원 될 것으로 예상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15년부터 추진기간을 3주기(3년 간격)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재정 지원과의 연계 등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 ※ '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 당시의 '구조개혁 평가'를 '18년부터 '기본역량 진단'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매 주기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2021년에 차기 진단을 앞두고 있으며, 2018년도의 진단 실시 결과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편하여 실시 예정

< 주기별 대학 구조개혁 추진경과 >



2018년 대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구분	2018년	2021년
대 상	모든 대학(종교·예체능계 제외)	진단 희망 대학
지 표 수	20개(전문대학 21개)	13개(전문대학 14개)
진단방식 및 기능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 및 2단계(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단일단계(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
구조조정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1만명)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유도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021년 진단 개요

- ▶ 대상 : 「고등교육법」상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
 ☞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진단 참여 불가
 ※ '18년 : 모든 대학 【323교(일반대 187, 전문대 133) 중 종교·예체능계(30교) 제외】
- ▶ 일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21.2월), 진단 실시(5~7월), 진단결과 발표(8월)
- ▶ 주관 :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 진단 대상기간 : 최근 3년

① 지표 구성 및 진단 방식

- 일반·전문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각 지표로 구성하고,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정량 지표는 절대평가 하되, 만점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단
- 정량적 정성 지표는 전담 진단팀을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진단을 실시, 평정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 후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 3~4개의 지표별 진단팀을 구성, 1개 진단팀(15명 내외)이 담당 지표만 진단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일반대학 기준) >

진단 항목	진단 지표	지표 구분	배점
발전 계획의 성과 (4)	특성화 또는 중장기 등 발전 계획	정량적 정성	2
	자율지표	정량적 정성	2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 (보수수준은 감점관리)	정량/정량적 정성	15(-1.5)
	교육비 환원율	정량	5
대학 운영의 책무성 (9)	법인 책무성	정량/정량적 정성	4
	구성원 참여·소통	정량적 정성	5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정량적 정성	2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정량적 정성	9
학생 지원 (13)	학생 학습역량 지원	정량적 정성	5
	진로·심리상담 지원	정량적 정성	4
	취·창업 지원	정량적 정성	4
교육 성과 (25)	학생 충원율	정량	20
	졸업생 취업률	정량	5
6개 항목	13개 지표	합계	100

※ 전문대학 진단 지표는 6개 항목, 14개 지표로 구성(산학협력활동 지표 추가)

② 주요 지표 개선사항

-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등의 '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을 확대(10점→20점)
 -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재정지원이 지속되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롭게 적용
- '법인 책무성' 및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 배점을 확대(3점→9점)하고, 종전 계획 위주의 진단에서 실적 중심으로 개선
-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도 높여(10점→15점)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그 보수수준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감점(-1.5점) 관리

③ 기타 사항

- (지역대학 지원 강화) 수도권 대학 치우침 방지를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시 권역 안배 확대(83.3%→90%)
 - 권역 대비 전국 단위 선정 비율을 종전 '5:1'에서 '9:1'로 확대하여 전체의 90% 내외를 권역별로 선정 후 10% 내외를 전국 단위로 선정
 - 정량지표의 만점기준도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달리 적용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권역 구분〉

구분	권역
일반대학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전문대학	수도권 / 강원·충청권 /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감점 사항) 2주기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대해 진단 시 최대 4점까지 차등 감점하는 등 페널티 적용
 - 부정·비리 대학은 제재 적용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감점 조치하고, 진단과정에서 충원율 등 허위·과장 발견 시 그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

□ 진단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간 약 1.6조 원 규모로, 지원 목적에 따라 국립대학·일반재정·특수목적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 대학 및 사업단 대상으로 공개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국고 지원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및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19년 기준) >

유형	지원 사업	지원규모	선정대상
국립대학	국립대학 육성	1,504억원	39개 국립대학
일반재정	대학혁신지원	8,596억원	기본역량 진단 통과대학
특수목적	산학협력(LINC+)	2,532억원	신청대학 중 75개교 선정
	연구지원(BK21+)	2,967억원	신청팀 중 525팀 선정
합계		1조 5,599억원	

* 출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2019년도 예산 자료

○ 교육여건·성과 등 핵심 정량지표의 최소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진단 참여 불가

- 또한 정부 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도 차등 제한

※ 제한대학 지정 후 다음해 평가에서 일정 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해제

○ 참여대학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하고 3년간(2022년~2024년) 지원

-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일반재정지원은 제한되나 특수목적(산학 협력, 연구지원 사업) 재정지원은 신청 가능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구분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지자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	제한	제한
2021 진단	참여 대학	기준 충족시	지원	신청 가능
		기준 미충족시	제한	신청 가능
	미참여 대학	제한	일부 제한*	지원

*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Ⅲ. 실태 및 문제점

1 학생 충원율 검증 및 정보제공 미흡

□ 학생 충원율 지표 부실 평가 및 검증 실효성 미비

- 학생 충원율은 대학정원 대비 학생 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점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지표이며 신입생·재학생으로 구분·진단

- 특히, '21년 진단에서는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 대신 대학의 자체 계획에 의한 사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점을 2배 확대

※ 배점 추이 : '15년 8점(신입 3, 재학 5)→'18년 10점(신입 4, 재학 6)→'21년 20점(신입 12, 재학 8)

학생 충원율 산출방식

- ▶ 신입생 충원율(%) : $(\text{정원내 주간입학생 수} / \text{정원내 주간모집인원}) \times 100$
- ▶ 재학생 충원율(%) : $\{ \text{정원내 재학생수(주간+계절제과정+원격학과)} / (\text{정원내 주간학생정원} - \text{학생모집정지인원}) \} \times 100$

* 출처: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학생 충원율은 정량 지표로, 절대평가 하여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임

- 산출근거는 매년 4. 1. 일자 기준의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에 등록된 최근 3년간 대학정보공시* 자료('21년은 대학 제출자료)이며,

* 근거(총괄관리기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항목 : 대학교 기본운영상황 및 교육·연구여건 등 주요정보(학칙, 교육과정, 충원율 등)

- 공시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학생 충원율 등 주요 항목*을 매년 현장 점검하여 위반사항 정정, 별점 부과 및 누적별점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

* 학생 충원율, 교원, 등록금, 장학금, 수시항목, 안전관리, 시설확보율 등 7개 항목 점검

< 2021년 학생 충원율 지표 진단 근거 및 기준 >

지표	공시(해당) 연도	출처	자료기준일
학생 충원율 (20점)	2019년	대학정보공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2019년 4월 1일
	2020년		2020년 4월 1일
	2021년	대학별 제출 자료	2021년 4월 1일

* 출처: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하지만 학생 충원율의 높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평가방법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
 - 일부 대학에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을 동원한 신입생 허위 등록 및 등록금 대납, 진단 기준일(4.1.) 경과 후 자퇴 처리 등 조직적인 비리 발생
 - ※ 신입생 충원율은 학생 기본정보 입력과 등록금 완납 시에만 통계자료로 집계됨
 - 이는 진단결과에 따라 학교당 연간 25~41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나 지표 진단 시 별다른 보완장치가 없어 비리를 방치하는 결과 초래
 - * 「2019년 대학혁신지원 사업」 선정 결과 일반대학 지원 기준
 - ※ 단, 재학생 충원율은 진단 통과 후 적정 충원율 유지 여부를 매년 확인토록 보완(21년)
- 특히 매년 실시되는 공시정보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충원율 관련 비리는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높아 은폐되기 쉬워 장기간 발견 곤란
 - '15~'18년에 아래 사례 대학 4곳을 2~3차례 현장 점검하였으나, 충원율 관련 적발사항은 ○○대학교의 정원 오입력 1건에 불과
 - 따라서 현장점검 시 일차적인 자료 점검 외에 중도탈락률 이상 징후 포착 및 충원 현황과의 대조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 필요

< 학생 충원율 관련 비리 적발 사례 >

-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진단 지표인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는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하여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교직원이 등록금까지 대납, 진단 종료 후 자퇴처리로 121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음
 - ※ 권익위 조사·의결을 통해 해당대학 입사·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 및 교육부로 이첩 (20.4월,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처리)
- △△대학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해 진단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허위 입학생 136명을 동원하여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 관련자 42명 징계 (20.6월, 언론보도)
- □□대학교는 충원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2016~2018년 동안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301명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이 드러남 (19.6월, 교육부 실태조사)
-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교는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학생 3명을 허위 입학처리 후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 적발 (16.8월, 교육부 특정감사)

< (참고)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현황 >

□ 대학정보공시

- (개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4조(국공립·사립 포함)
- (공시방법)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또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
 -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는 총 14개 분야의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공시
 - 대학 홈페이지는 법인·대학·산학협력단의 예·결산 관련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내·외부 감사보고서 1년간 공개
 -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 * 항목별 관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주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총괄관리기관)



□ 고등교육통계

- (개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기본통계조사로서 학교, 학생, 교원, 직원, 강좌 등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양질의 통계데이터를 생산하고 국가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기초연구 자료로 제공
-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 (조사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약 1,900개교
- (조사기준일) 매년 상반기(4.1.) 및 하반기(10.1.) 정기 2회 및 수시 조사
- (조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조사방식) 조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한 자료 입력 방식, 학생 총원현황은 학생별 인적·학적정보 등 원자료를 입력하여 집계
- (조사결과 활용) 대학정보공시센터 연계 및 교육기본통계 발표(4.1일 기준, 8월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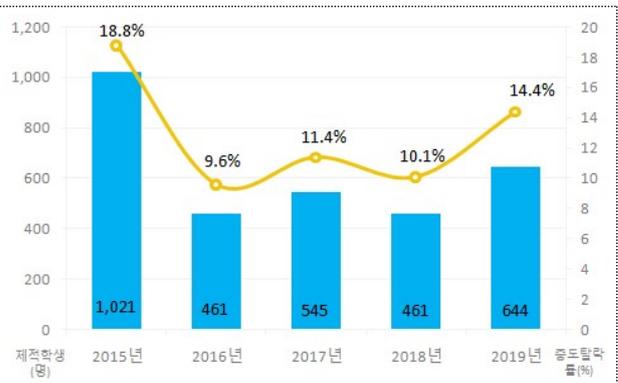
□ 학생 중도탈락률 정보제공 미흡

- 대학정보공시 항목인 학생 중도탈락률은 4. 1일 기준의 재적(在籍)학생 중 연간 학업중단 학생 비율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에 대비되는 개념
 - 신입생과 재학생의 중도탈락은 그 사유나 결과 값이 다를 수 있으나, 현행 중도탈락률은 신입생 구분 없이 전 학년을 통합 공시
 - 이로 인해 연관 정보와의 교차 검증이 어려워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교육현황 정보 제공 미흡으로 그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에도 한계
 - 특히 신입생 충원율에 허위·조작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비리 예방 측면에서 신입생 중도탈락률을 구분 공시하여 검증자료로 활용 필요
- ※ 신입생은 등록금 납입 시만 집계되어 부정 등록한 경우 진단기준일(4.1.) 이후 자퇴, 입학취소 등 제적 처리하므로 평균치보다 중도탈락률이 커지는 한 요인으로 작용

< (일반대학) ★★대학교 중도탈락률 >



< (부정대학) □□대학교 중도탈락률 >



* 일반적인 경우 중도탈락률이 6% 내외인 반면, 충원율 조작대학은 10% 이상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임

* 출처: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 중도탈락률 산출방식 및 개요

▶ **중도탈락 학생비율(%)** : (중도탈락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정의 : 대상기간 내 재적학생 중 제적된 학생 비율로 정보공시 및 통계조사 항목
- 대상기간 : 중도탈락학생 전년도 3.1. ~ 당해연도 2.29. 기준, 재적학생 전년도 4.1. 기준
- 조사방식 : 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한 **학생별 인적·학적변동 정보 입력** 방식
- 탈락사유 :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학생활동,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
- 정보활용 : 대학정보공시 연계 및 교육기본통계 발표(대상기간 기준, 8월 공시)

2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부정·비리 사안 조치 부적정

- 진단 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감점 처리하거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미흡**
 - 진단대상 기간 중 대학의 각종 부정·비리로 행정 및 감사 처분이 확정되거나 형사기소 된 경우 그 처분 정도에 따라 감점* 등 조치
 - 또 진단 제출 자료에 허위·과장 발견 시 그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하거나 진단 후 발견할 때에는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방안」에 따라 진단 시 감점기준 등 규정
- ※ 진단 통과대학은 협약체결 후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두어 부정·비리 발생 등의 협약 해지 사유 및 국고환수 명시
- 특히 **진단 과정에서 내부고발이나 진단주관기관 등에 의해 부정·비리 사안 등 발견 시 감점 조치 외에는 명시적인 처리기준이 없어 방치**

■ 수도권 ◎◎대학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교육부에 내부고발도 있었으나, 자료제출 요구만 한 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진단에서 감점처리 된다고만 안내하고 명확한 조치 없이 장기간 처분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

(‘20.8월, 언론보도)

- 또 부정·비리 사안으로 감점된 대학에 대해서는 최종 진단결과만 발표하고, **해당 대학은 별도 공개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충원율 허위·조작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 제기
 - 반면, 「고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공시대상 정보로 지정되어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3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적정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학의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정원 감축 요구, 진단결과 공표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처분도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조치대상 대학은 폐교 또는 통폐합하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
- '21년부터 참여희망 대학을 진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지만 진단 전 실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진단 실시 전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진단 참여 불가 및 각종 재정지원 제한 등의 명백한 규제에도 법적 근거는 미비

* 시행 근거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교육부, '19. 12.)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교육부, '20. 8.)

※ 그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2016년, 임기만료 폐기) 등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

〈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경과 〉

- ▶ 2014. 4월 :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 의원 발의, 임기만료 폐기
- ▶ 2015.10월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안홍준 의원 발의, 임기만료 폐기
- ▶ 2016. 6월 :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동 의원 발의, 임기만료 폐기

*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국회입법현황 자료

-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해당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조치는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논란의 소지
 -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그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학자금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은 진단 등의 실시로 인한 불이익조치임에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한도 기준설정 귀책사유가 있을 때의 국가장학금 제재 등으로 진단에 따른 제한조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음

- 이는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이하생략)

< 정부 재정지원제한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I 유형	II 유형	일 반	취업 후 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I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II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근거 >

-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4. 반기 및 연차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장학사업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실태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7.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한도 제한대학

* 출처: 교육부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 시안

IV. 개선 방안

1 학생 충원율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

□ 학생 충원율 검증 실효성 강화

- 학생 충원율 지표 진단 시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신입생 중도 탈락률의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
 - 아울러 대학 종류별/권역별 및 신입생/재학생 등의 중도탈락률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 범주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도탈락률을 현장 점검 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의 교차 검증 등에 활용

< (예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② 주요 내용</p> <p>□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화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결과를 진단에 반영 	<p>② 주요 내용</p> <p>□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화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확대하여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결과를 진단에 반영 ○ <u>신입생 충원율 진단 시 신입생 중도탈락률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u> <p><small>* 정상 범주는 대학별/권역별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진단 실시 전 기준 설정 및 안내 예정</small></p>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및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시행계획' 등 지침에 반영

□ 학생 중도탈락률 정보제공 강화

- 유의미한 대학 현황정보 제공과 정보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해 신입생 중도탈락률을 구분하여 공시

< (예시)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p> <p>■ 공시지침 【공시내용】 학과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p> <p>■ 작성지침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 재적학생 수)×100</p>	<p>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p> <p>■ 공시지침 【공시내용】 학과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 ※ <u>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은 구분 공시</u></p> <p>■ 작성지침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 재적학생 수)×100 【중도탈락신입생비율(%)】 : (중도탈락 신입생 수/ 재적신입생 수)×100</p>

⇒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에 반영

2 부정·비리 사안 제재조치 강화

-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감사 실시 또는 고발(수사의뢰) 조치 등 처리기준 명문화 및 관련 내용 공지
 - 부정·비리 사안에 대응하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통해 원활한 감시 체계를 작동함으로써 재발 방지 노력 필요

< (예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input type="checkbox"/> 감점 사항 ○ 총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 강화 - 진단과정 중 허위·과장 발견 시, 허위·과장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 - 진단과정 중 허위·과장 수준이 중대한 경우 또는 진단 실시 후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추가 감점, 일반 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 적용	<input type="checkbox"/> 감점 사항 ○ 총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 강화 - 진단과정 중 허위·과장 발견 시, 허위·과장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 - 진단과정 중 허위·과장 수준이 중대한 경우 또는 진단 실시 후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추가 감점, 일반 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 적용 - <u>중대 사안에 대해 감사 실시 및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u>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등 관련지침에 반영

- 또한 자료의 허위, 과장 등 부정·비리로 인해 진단에서 감점된 경우 해당 대학을 별도 공개하여 부정·비리 대학의 경각심 제고 및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 (사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반영

3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까지 추진해온 대학구조 개혁의 중간결과가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미치지 못해 앞으로도 대학의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
 - ※ '15년 당시 정원감축 계획/현재 실적 : '23년까지 16만 명 / 5.6만 명(35% 수준)
 - 따라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의 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

< (예시) 「고등교육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신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하는 범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

-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고등교육법」 개정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교육부

□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과 제	조 치 기 한
<p>① 학생 충원을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p>	<p>○ 학생 충원을 검증 실효성 강화 - 신입생 충원을 진단 시 신입생 중도탈락률의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 보완 - 중도탈락률을 현장점검 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의 교차 검증 등에 활용</p> <p>⇒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및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시행계획」 등 지침에 반영</p> <p>○ 학생 중도탈락률 정보제공 강화 - 학생 중도탈락률에 대해 신입생 중도탈락률을 구분하여 공시</p> <p>⇒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에 반영</p>	<p>2021. 5월</p>
<p>② 부정·비리 사안 제재조치 강화</p>	<p>○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 감사 실시 또는 고발(수사의뢰) 조치 등 처리기준 명문화 및 관련 내용 공지</p> <p>⇒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등 관련지침에 반영</p> <p>○ 부정·비리로 인해 감점된 경우 해당 대학을 별도 공개</p> <p>⇒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반영</p>	<p>2021. 5월</p>
<p>③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p>	<p>○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p> <p>⇒ 「고등교육법」 개정</p>	<p>2021. 12월</p>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운영규정

제11조(장학금 배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학제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제재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배분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장학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운영관리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장학금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 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항목 (일반대 배점)	진단 지표	진단 요소	배점	
			일반대	전문대
발전 계획의 성과 (4)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 발전 계획 추진의 적절성 - 발전 계획과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간 연계성 -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2	2
	자율지표	- 다른 진단 지표 이외에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비전 특성화 방향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의 발전 사례	2	2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전임교원 보수수준(-1.5점, 감점)	15	15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환원율	5	5
대학 운영의 책무성 (9)	법인 책무성	- 법인 책무성 실적 -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4	2
	구성원 참여·소통	- 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의 법적 요건에 부 합하는 위원회 구성 실적 - 법령상 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 련된 투명성 확보 실적 - 구성원 참여소통을 통한 주요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5	3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 전공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체제 구축운영	20	18
	산학협력 활동	- 산학협력 활동 실적	-	4
	수업관리 및 학생 평가	- 재학생 당 총 강좌수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 강사 보수수준 -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9	9
학생 지원 (13)	학생 학습역량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운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실적 등	5	4
	진로·심리 상담 지원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실적 등	4	3
	취·창업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실적 등	4	3
교육 성과 (25)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	20	20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 - 유지취업률	5	10
합계			100	100

- **(개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
 - 인증대학의 사회적 지위 및 신뢰를 부여하고 대학의 경쟁력,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과는 무관
- **(법적 근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국공립·사립 포함)으로 신청한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 실시
- **(평가내용)** 일반대학의 경우 필수평가준거(6개) 및 일반평가준거(30개)를 평가하고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인증이 유효함**
 - ※ 진단의 일부 지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평가인증은 폭넓은 평가준거를 운영
- **(인증절차)** 서면·방문평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인증여부가 확정되며 판정기준에 따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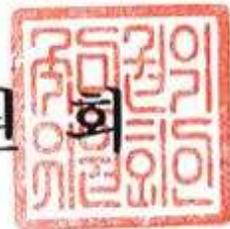
< 일반대학 기관평가인증의 평가항목 구성 >

필수평가준거(6)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시설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정원내 재학생 총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일반평가준거(30)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대학이념 및 경영	대학경영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자체평가
	대학재정	대학재정 확보,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
교육	교육과정	교양·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개선 체제
	교수학습	수업, 성적관리,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교직원	교수	교원인사제도, 처우 및 복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직원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처우 및 복지, 직원 전문성 개발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교육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학생지원	학생상담·취업지원, 학생활동지원·안전관리, 소수집단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대학성과	연구성과,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적 책무	사회봉사정책, 사회봉사실적,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정본입니다.

2020. 11. 24.

국 민 권 의 위 원



ACRC